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신규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의뢰심사 심사대상사업 범위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기존에 총사업비 1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던 중앙의뢰심사를 총사업비 3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하되, 별표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인 경우에도 중앙의뢰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심사제외 대상사업 명확화 및 추가(안 제3조제2항)

심사제외 대상사업 범위가 불분명했던 안 제3조제2항제1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을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다. 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 등(안 제4조)

기존에 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기심사를 3회로 확대 실시하고 중앙의뢰심사 관련 의뢰서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재심사 대상사업 (안 제6조)

-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함

2) 총사업비 증가 외 투자심사 후 사업추진 지연·보류, 자원조달계획 변경, 사업 위치 변경의 경우에도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
다. 투자심사 사후관리 강화 (안 제9조의2)
투자심사 이력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1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별표]에 규정된 심사제외 대상사업
4.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9

월 30일”을 “8월 31일까지, 3차심사는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 5일”을 “2월 28일”로, “8월 5일”을 “6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교육시설, 초·중등교육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교육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이었으나 심사 후 국비·교부금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는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육감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 별로 그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2월 1일”을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 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중앙의뢰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 업비 <u>100억원</u>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u><신 설></u> 나. ~ 마.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 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u>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u> <u>여 확정된 사업</u> 2. · 3. (생 략) <u><신 설></u>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u>300억원</u> ----- ----- 나. <u>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u> <u>업비 300억원 미만의 신규</u> <u>투자사업 중 [별표 1]에 해</u> <u>당하는 사업</u> 다. ~ 바. (현행 나목부터 마 목까지와 같음) ②----- ----- -----.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 칙」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별표]에 규정된 심사제외 대 상사업 2. · 3. (현행과 같음) 4. <u>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u>

<신 설>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
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
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
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는 외국인자본인 사업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
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
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 . -----

----- 있고, 매년 또는 격년
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3
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 8월 31일까지, 3차심사는 12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
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
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3
월 5일까지, 2차 심사는 8월 5일
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
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월 31일-----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2

월 28일----- 6월 31일

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
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
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
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

	<u>서는 아니된다.</u> <u>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1.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교육시설, 초·중등교육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u> <u>2. 지방교육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u>④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 <u>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	제6조(재심사) ----- ----- -----

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

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

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늘

어난 사업

나.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

업

3. (생략)

<신설>

<신설>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4.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 민

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이었으

나 심사 후 국비·교부금 등

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

는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가 투

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

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

업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생 략)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감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 우

<u><신 설></u>	<u>③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u>1회</u>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u>12월 1일까지</u>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 ----- <u>2회</u> ----- ----- ----- -----. ② ----- ----- ----- -- <u>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u>-----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총사업비 3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 중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총사업비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 중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학교 신설·이전 사업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 시 기준재
정수요액에 산정이 필요한 사업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개축 사업

다. 「교육공무원법」 제39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지
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근거한 연수기관·교육훈련기관(분원 포함)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

2. 총사업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 중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분원 포함) 및 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분원 포함)
시설의 신축·개축사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별교부
금 교부를 신청하려는 사업

나. 「유아교육법」 제6조에 근거한 유아교육진흥원(분원 포함) 신축·개축 사업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기록관(분원 포함)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 다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직속기
관·교육지원청 소속기관(분원 포함) 시설의 신축·개축 사업